

서울고등법원 2024. 3. 13 선고 2023나20432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3. 13 선고 2023나204320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9. 7 선고 2022가합53788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결

피고, 항소인 1. B

2. 주식회사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, 임지애

변론종결 2024. 1. 24.

판결선고 2024. 3. 1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9. 7. 선고 2022가합537885 판결

주문

1.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1) 피고 B와 D 사이에 2017. 9. 5. 체결된

근저당권설정계약을,2)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2017. 9. 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,3) 피고 B와 D 사이에 2018. 4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각 581,937,5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나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1,937,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다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- 1) 피고 B와 D 사이에 2017. 9. 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,
 - 2) 피고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2017. 9. 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,
 - 3) 피고 B와 D 사이에 2018. 4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
- 각 582,036,1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2,036,1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, 변경하는
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8면 17행의 “그러나”부터 제9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“그러나 위 각 증거와 제1심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2023. 2. 3.자 회신 결과,
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2023. 12. 21.자, 중소기업은행의 2024. 1. 11.자 각
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신용보증기금은 이
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2018. 6. 27.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F가
기업운전자금으로 기업은행과 L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것으로 유동화회사가 양수하였던 F의
무보증 사모사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답한 점, ② 신용보증기금은 위 회신에서, 유동화회사를
대위하여 변제하더라도 유동화회사에 대위변제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아니한다고 답한 점, ③
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와 관련한 통지 여부 등을 묻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
대하여 답변할 바가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은행이
피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유동화회사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, 설령 이러한
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동화회사가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
매매계약으로 인하여 D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
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D에게
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.”

○ 제9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“피고들은,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당시 D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송달 여부가 불분명하고,
송달받았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, 유동화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이전인
2018. 6. 27.경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가 있었으므로 유동화회사는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게
되어, 원고가 유동화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부존재하는바,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은
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21. 9. 25.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

인정되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2018. 6. 27.경 대위변제한 F의 채무는 기업운전자금 대출과 관련된 보증채무로서 F가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”○ 제13면 17행의 “964,440,203원”을 “954,440,203원”으로 변경한다.

○ 제15면 7행의 “①”부터 9행의 “75,984,657원)이고,”까지 부분을 “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. 1. 24.을 기준으로,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581,937,533원(= 원금 360,000,000원 + 약정지연이자 121,216,438원1) + 지연손해금 100,721,095원2))이고,”로 변경한다.

○ 제16면 3행, 7행, 8행의 각 “557,299,725원”을 “581,937,533원”으로 각 변경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경란, 판사 권혁중, 판사 이재영

별지

1) = 360,000,000원 × (2018. 5. 15.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. 9. 25.까지 3년 134일/365일) × 연 10%, 원 미만은 버림

2) = 360,000,000원 × (2021. 9. 26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. 1. 24.까지 2년 121일/365일) × 연 12%, 원 미만은 버림